#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60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 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다.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3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4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 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 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마.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5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제2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과태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4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6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5조(「항공안전법」의 개정)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 본문 중 "제159조부터 제163조"를 "제159조부터 제162조"로 한다.

제165조 중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를 "제144조 및 제156조" 로 한다.

제16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 해하거나 기피한 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1 조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 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항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63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8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	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
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u>아니한 자</u>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	
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	
<u>한 자</u>	
1의3. ~ 9. (생 략)	1의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

	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5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	
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u>&lt;삭 제&gt;</u>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	
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u>자</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벌칙) ① ~ ⑥ (생 략)	제71조(벌칙) ① ~ ⑥ (현행과 같
	승)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⑦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u>&lt;삭 제&gt;</u>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	
<u>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u>&lt;삭 제&gt;</u>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u>한 자</u>	
1의4.・2. (생 략)	1의4.・2.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u>&lt;신 설&gt;</u>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u>자</u>

-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b>
1. ~ 25의4. (생 략)	1. ~ 25의4. (현행과 같음)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u>&lt;삭 제&gt;</u>
<u>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7. ~ 28. (생 략)	27.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삭 제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u>4의2</u> . · <u>4의3</u> . (생 략)	<u>4의3</u> .・ <u>4의4</u> .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	<u>&lt;삭 제&gt;</u>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164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	
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	
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	
157조 및 <u>제159조부터 제163조</u>	<u>제15</u> 9조부터 제162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l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u>제144</u>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u>제144</u>

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3. ~ 15. (생략)

② ~ ⑦ (생 략)

조 및 제156조
제166조(과태료) ①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58조(벌칙) 제1항제1호의2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 · 관리· 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삭		
		제		
2	제60조(과태료) 제1항제2호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에게 형벌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 , , , , , , ,	부과하도록 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58조(벌칙) 제1항제1호의2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2	제60조(과태료) 제1항제2호의2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 2. 상세 사유

- 제58조(벌칙) 제1항제1호의2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 의 유지·관리·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위반 횟수 등에 대한 정량적 예측·분석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재정수입의 추계가 곤란
- 제60조(과태료) 제1항제2호의2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위반 횟수 등에 대한 정량적 예측·분석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재정수입의 추계가 곤란

### Ⅲ. 부대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더라도 재정수입의 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추후 시행령(별표 5)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규정할 필요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최민아	전대훈	신보미	엄정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대훈	044-201-3812	theway2you@korea.kr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 <del>용</del>	
2	안 제65조제1항 제3호(벌칙)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공 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5조제1항 제3호(벌칙)	제3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 삭제 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대한 추계가 불가	

### 2. 상세 사유

○ 제65조(벌칙) 제1항 제3호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는 내용으로, 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인데,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데에는 별도의 재 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물류터미널 공사'라는 비정기 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바,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 능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동우	김미리	안진애	김근오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동우	044-201-4008	artisan132@korea.kr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물류거래 분쟁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 여부 판단을	
1	과 79 코 과 1 중L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	
1	제73조제1항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기		미첨부 근거 규정
	제73조제1항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1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 2. 상세 사유

○ 제73조제1항 조정의 권고를 위해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거짓으로 한자,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현행 법의 벌금(1천만원) 규정을 과태료(5백만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 조직 신설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법 시행 이후 해당 건 으로 인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으 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하원	전병규	최정민	김근오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병규	044-201-3995	jun0404@korea.kr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1조제26호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매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1년
	7 110122 112022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조항 삭제
	제84조제2항제4호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매도 신고 미이행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2	*10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2	부과하도록 함(제8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81조제26호	제26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제84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_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시 재	
	의2	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 2. 상세 사유

- 제81조(벌칙) 제26호는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린 경우, 팔리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 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제84조(벌칙) 제2항 제4호의2는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린 경우, 팔리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미이행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벌칙을 제외하는 대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도 산출하기가 어려움

### Ⅲ. 부대의견

O 해당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최혜영	박성호	임월시	전형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혜영	044-201-3857	chy9801@korea.kr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63조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벌칙(500 만원 이하)조항 삭제	
2	안 제166조제1항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제12호의2	과하도록 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3호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2	안 제166조제1항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호의2	- 별도 재정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가 불가	

### 2. 상세 사유

- 제166조(과태료) 항공안전 활동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에 대해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 대해 개정 전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된 부분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가 없을 것이며, 자료제출, 검사의 목적이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사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 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김승진	장인갑	장동철	유경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승진	044-201-4249	kimsj@korea.kr